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제1조(회원) ①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본인회원이란 당해 저축은행에 요구불예금계좌(이하 “결제계좌”라 함)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조(연대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잔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이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3조(카드의 관리) ①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카드의 소유권은 저축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유효기한이 경과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전 각 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갱신 발급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재발급 등으로 유효기한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①저축은행은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신규 및 갱신 발급시 연회비 징수시기는 발급등록일 기준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청구합니다.

②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저축은행은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③저축은행은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저축은행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저축은행과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2항 이외의 별도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6조(카드의 비밀번호) ①회원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자리 숫자의 카드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라 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은 저축은행이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거래시마다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조회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7조(카드의 이용한도) ①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저축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지정할 수 있고, 카드 발급시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송부시 통보해 드리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기설정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 저축은행에 이용한도 변경을 제시하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기타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 ①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과 제휴한 업체(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함)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저축은행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저축은행 등과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 회원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유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가맹점과 저축은행 등이 별도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카드이용의 제한) ①회원은 카드를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카드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카드는 저축은행의 온라인 마강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SMS서비스) ①회원의 신청으로 저축은행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이하 “SMS”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결제금액, 결제여부 등 결제관련 사항

- 2. 카드의 승인 및 승인취소 내역
- 3. 이벤트 통보 및 각종 카드 관련 정보사항
 - ②저축은행 등은 제1항 이외에 다양한 SMS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SMS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정비 및 수정작업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거나 서비스가 지연, 누락될 수 있습니다.
 - ④저축은행은 SMS 제공의 대가로 회원에게 매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정액의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등의 사정으로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1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①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저축은행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2. 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 및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②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③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저축은행의 홈페이지, 앱,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1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1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전문개정 2022.2.3.]

제12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저축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제13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①회원은 계좌를 개설한 저축은행에 카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등록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회원이 지정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②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현금자동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저축은행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저축은행 등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 등은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시간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카드 1매당 2만원의 회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어,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 제3자 보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 3.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 4.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 5.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6. 분실·도난 신고 후 보상신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및 부도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7.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인지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신고 지연기간 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부담)

④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에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위·변조된 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저축은행 등에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 2. 카드의 양도, 대어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제16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저축은행 등은 현금자동지급기,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저축은행 등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 도난·분실 등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7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회원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저축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앱,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 경우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2.2.3.>
- ③회원은 저축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축은행 등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개정 2022.2.3.>
- ⑤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개정 2022.2.3.>
- 제18조(변경사항의 통지)** ①회원은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영업점 또는 체크카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의 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9조(카드이용 정지 및 탈퇴)** ①저축은행 등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사실을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약관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개인회원의 사망이민, 기업회원의 파산·해산의 경우
 4. 미성년자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거래중단을 요청한 경우
 5. 가족회원인 경우 본인회원과의 가족관계가 소멸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6. 자동갱신 또는 카드 교체 발급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②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저축은행 등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 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가맹점과 회원이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저축은행 등은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저축은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자기거래상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본 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2.2.3.>
- ⑤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2.2.3.>
- ⑥제5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설 2022.2.3.>
- [제목개정 2017.8.11.]
- 제21조(약관변경 승인 등)**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납부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 ② 약관 변경의 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이를 서면·전자우편 등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납부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납부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납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납부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납부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납부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22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저축은행 등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은 가맹점과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저축은행 등의 본점 또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 (할부금융)

제1조(적용) ① 이 특약은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이용자(이하 “채무자”) 사이의 할부금융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제2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을 따른다.

1.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3. 채무자가 할부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채무자가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융자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을 따른다.

③ 할부금융거래의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안내)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3.]

제3조(관할법원의 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할부금융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 이전에 체결된 할부금융거래에 대하여도 그 개정일부터는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수
입
인
지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가계용)

※ 본 여신거래약정서 중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내용은 가계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2018.11.26.>

H B 저축은행 앞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상호저축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①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개정 2014.8.20., 2016.12.19., 2018.1.31., 2019.12.5., 2022.2.3.>

여신과목 (여신종류)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자금용도			
여신(한도)금액	금 원	계좌번호	
여신개시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승인일	여신기간만료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1회전기간 개월) <input type="checkbox"/> 여신일부터 년 월 일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변동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2호 선택)	지연배상금률 : 대출이자율 + 연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5항 적용) 최고지연배상금률 : 연 ()%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연 ()% <input type="checkbox"/> 금리변동주기 ()개월	
이자 및 지연 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신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여신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일과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 ()개월 마다 대출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년 ()개월 ()일 동안 거치합니다. ※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회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매 ()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담보 예금등의 이차지급일 또는 이차원가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 본은 당일 종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금 등의 납입특약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상계특약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계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
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거래라 함은 대출한 금액을 여신기간만
료일에 일시 상환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한도거래의 경우는 제1항의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1회전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지연배상금)

①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②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
익상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
정 2016.12.19>

③계약금액내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④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
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2019.3.6.>

제2조의2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① 본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기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 이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저축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잔여일수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

로 계산하되,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약정기일
로 적용합니다.

③ 기한전상환수수료는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에서 저축은행
이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합니다.

[본조신설 2019.12.5.]

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①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차용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명자료에 의합니다.

②계약금액내대출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확정된 채무
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 (감액·정지)

①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②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총당하기로 합니다.

②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삭 제> <2019.3.6.>

④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
과한 금액은 발생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2019.3.6.>

⑤대출의 이자계산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일중의 최고
잔액이 당일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자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회전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은행은 1회전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회전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도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회전기간만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6. 8.11>

제6조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한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7.8.11.>

제7조(인지세의 부담)

-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개정 2011.8.1>
- ②<삭 제> <2011.8.1>
- ③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8조 (담보·보험)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권 설정)

-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

종 별	증서(계좌) 번 호	명의인	금 액 (계약액)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제10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채비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 ②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본인은 저축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저축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개정 2017.8.11.>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개정 2017.8.11.>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개정 2017.8.11.>

제12조(자금용도의 유용시 제재조치) 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③용도의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본조신설 2018.11.26.]

제13조 (기타 특약사항) <개정 2018.11.26.>

	본 인	(인)
--	-----	-----

제14조 (입금 의뢰) <개정 2018.11.26.>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조신설 2016.12.19]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금액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개정 2008.1.14., 개정 2016.12.19>

본 인	(인)
-----	-----

수
입
인
지

--	--	--	--

계부금납입계약서

H B 저축은행 앞

년 월 일

채무자(본인) _____ (인)

본인확인
인감대조

주 소 _____ (인)

본인확인
인감대조

연대보증인 _____ (인)

본인확인
인감대조

주 소 _____ (인)

본인확인
인감대조

본인은 HB저축은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부금 계약의 내용 :

(단위 : 원)

계약금부금	금	원	계좌번호	#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만기일	년	월	일	매월 일, 매 일
납입총액			납입기일	총액
납입기일 및 매회 계(부)금액	년	월	일부터	회 매회 계(부)금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부터	회 매회 계(부)금
	년	월	일까지	원

제1조 (금부후의 계(부)금 납입)

- ① 금부후의 계(부)금은 위 계약에 따라 그 납입기일에 입금합니다.
- ② 제1항의 계(부)금을 납입기일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곧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귀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용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 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사·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채권과 다음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 원)

종별	증서(계좌)번호	명의인	금액(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담보보형)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4조 (연대보증에 대한 약정)

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상환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관이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상환부분은 그 책임을 제외한 부분만 부담합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개정 2022.2.3.>
3.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

- ②연대보증인은 상호저축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기전에는 채무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금과의 상계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 ③연대보증인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교체 또는 일부번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④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으로 적용됩니다.
- ⑤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상호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인이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4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 ⑥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질권설정자	(인)

본인 및 연대보증인(또는 질권설정자)은 상호저축은행에서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 인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질권설정자	(인)

여신(□기한연장, □조건변경)신청서

H B 저축은행 앞

본인은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여신에 대한 거래조건(연대보증인 교체·면제 포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1. 조건 변경하고자 하는 여신내용

차입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	약정기일	적용금리	비고(계좌번호, 보증내용 등)

2. 조건변경(보증인 교체·면제 포함, 해당 사항만 기재) <개정 2022.2.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약정기일		
금리변동주기		
적용금리		
상환방법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보증인변경		
담보물변경		
기타		

변경사유 :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TEL : _____)
 연대보증인 _____ (인)
 주 소 _____
 (TEL : _____)
 담보제공자 _____ (인)
 주 소 _____
 (TEL : _____)

본인확인
인감대조

본인확인
인감대조

본인확인
인감대조

- (주) 1. 기한연장으로 인하여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리변경내역도 조건변경내용에 포함할 것.
- 2. 조건변경내용이 보증인 교체(면제)인 경우 산·구 연대보증인이 모두 서명(날인)하되, 연대보증인 앞에 "신" 또는 "구"를 표기하여 산·구연대보증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제인 경우에는 변경후 앞에 "면제"라 기재할 것.
- 3. 보증인 교체(면제)인 경우에는 조건변경하고자 하는 여신내용의 비교란에 보증종류, 보증한도 등을 기재하며, 보증인 추가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란에 "보증인추가"라고 기재할 것.
- 4. 한도거래의 조건변경은 추가약정서(한도거래조건변경용)로 운용할 것

수
입
인
지

--	--	--	--	--

추 가 약 정 서

(한도거래 조건변경용)

H B 저축은행 앞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본인확인
 주 소 _____ 인감대조
 (TEL : _____)
 연대보증인 _____ (인) 본인확인
 주 소 _____ 인감대조
 (TEL : _____)
 연대보증인 _____ (인) 본인확인
 주 소 _____ 인감대조
 (TEL : _____)
 담보제공자 _____ (인) 본인확인
 주 소 _____ 인감대조
 (TEL : _____)

아래 여신에 대한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거래조건을 변경할 여신내용

차입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	약정기일	적용금리	비고(계좌번호,보증내용등)

2. 변경할 거래조건(보증인 교체·면제 포함, 해당 사항만 기재) <개정 2022.2.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한도금액		
약정기일		
금리변동주기		
적용금리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보증인변경		
담보물변경		
기타		

변경사유 :

- (주) 1. 특정근담보인 경우, 담보제공자의 자서(날인)를 받을 것
 2. 보증인변경의 경우, 신규보증인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채무관계자의 자서(날인)를 받을 것

특정채무담보
 근 담 보

용
예

--	--	--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년 월 일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_____ (인)
 주 소

채 무 자 _____ (인)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_____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채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① 피담보 채무의 표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래약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금액 :	금 원
다. 상환기일 :	년 월 일
라. 이자율 :	연 %
마. 지연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_____약정서, 년 월 일자 _____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② 채권최고액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가. **금 원**
나. 설정비용의 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근저당권 결산기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3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정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p>정하지 아니합니다.</p> <p>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p>

제2조 (공부와 실제의 불일치 등)

- ①(근)저당물건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②(근)저당도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합니다.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 ①설정자가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②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 ①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 ②설정자가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는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

하는 때에는 그 보험 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③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 ①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 ②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임차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④(근)저당물건이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처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제3조 제3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등)

-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8.12.17.>
-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12.17.>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으로써 직접 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17.>
- ④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17.>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개정 2018.12.17.>

제7조 (회보와 조사)

- ①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 ②특정채무담보인 경우,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음과 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것을 설정자에게 통보합니다.

제8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 ①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정 2011.8.1>
- 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개정 2011.8.1>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분담
 - ③ <삭 제> <개정 2011.8.1>
 - ④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상호지속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개정 2011.8.1>
 - ⑤ 채무자가 상호지속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9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10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사항)

설정자 : (인)

(근)저당물건 목록 :

대 상 목 적 물 의 표 시	순 위

한정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여 신 분 류 표

○ 고객명 : 서명 또는 (인)

○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의 범위(해당란 □에 “√” 표기)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 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자금대출	대출대상, 자금용도 등 대출 취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대출
<input type="checkbox"/> 어음할인	거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저축은행이 만기일까지의 소정이자(할인료)를 어음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할인의뢰인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대출
<input type="checkbox"/> 계약금액내대출	계금·부금·적금 가입자중 미급부(대출)좌에 대한 대출
<input type="checkbox"/> 예적금담보대출	당해 저축은행에 계·부금, 거치식예금·적립식예금, 표지어음에 가입한 자로서 동 예금 등을 담보 취득후 실시하는 대출
<input type="checkbox"/> 종합통장대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종합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약정을 맺은 후 예금잔액을 초과한 인출 청구시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금시 대출이 자동상환되며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대출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대출	주택의 신축·구입·개량(중축)·임차자금 용도의 대출
<input type="checkbox"/> 외상채권대출	거래처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채권과 외상매출채권을 저축은행이 매입하여 평균만기일에 일괄지급하고 또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매입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만기일전에 대출을 취급하며, 이에 부대하여 회계업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기타대출	상기 이외의 대출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이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담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권을 미리 포기하고 이 설정계약을 즉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설정자는 위 기간 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다음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철회함. 년 월 일, 포기함. 년 월 일)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합니까? (철회한 때에는 이 계약은 취소되고 설정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담보설정·해지에 드는 비용은 설정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철회권을 포기합니까? (철회권을 포기한 때에는 이 설정계약은 즉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함.

년 월 일

설정자 (인)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저당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전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전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채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저축은행은 담보제공부동산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
입
인
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 월 일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지상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겸 지상권자 _____ (인)
 주 소
 채 무 자 _____ (인)
 주 소
 지 상 권 설 정 자 _____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토지목록란에 기재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제2조 (지료)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부터 년 으로 합니다.

제4조 (지상권의 처분)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타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의없기로 합니다.

제5조 (토지의 보존 등)

- ①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서면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공작물 구축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 ②설정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지상권자에게 통지하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 ①설정자는 이 지상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나. 지상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3. 지상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가.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분담
- ③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지상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전문개정 2013.5.31.]

제7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지상권자의 본점 또는 거래 영업정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 사항)

설정자 : (인)

토지 목록 :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 ①(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합한 적립금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에 미칩니다.
- ②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3조 (위험부담·면책조항)

- ①설정자는 채권자에게 인도한 담보목적물(담보증서, 통장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 또는 증권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②담보목적물(담보증서, 통장 등)상의 인영·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③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못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담보물건이 동산인 경우))

- ①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 ②설정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 ③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 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 ①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8.12.17.>
 -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12.17.>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제6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제7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8조 (비용부담)

- ①채권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내에 "V"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등록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채권 매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법무사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말소(저당권 해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기일도래전 상황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서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점유·관리·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9조 (특약사항)

설정자 (인)

질권의 목적물의 목록 (예금 등) :

(단위 : 원)

종 별	증서번호	명의인 수익자 (위탁자)	금액 또는 계 약 액 목 표 액	설정일현재 입금 부금 누계액 또는 목적신탁 기적립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주의 : 신탁의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의 성명을 ()안에 기재하십시오.

담보목적물의 목록 (동산·지영채권·유가증권) :

주의 :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는 증권의 종류, 형식, 권면액, 수량, 발행처, 발행
년월일 등으로, 동산의 경우는 품명, 종류, 규격, 기번호, 품질, 수량, 포장종류,
제조년월일 등으로 그 물건 또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
십시오.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질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적금 등의 지명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 대금 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예·적금이나 유가증권·동산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채무담보	공용
근 담 보	

양도담보계약서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H B 저축은행 앞

년 월 일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 _____ (인)
 주 소
 채 무 자 _____ (인)
 주 소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양도담보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의 기재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 ① 담보목적물(제7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어온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설정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 (담보목적물의 보존 등)

- ① 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그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그 예방 또는 침해구제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고 채권자에게 곧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설정자는 권리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 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 일지라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 (다른 담보의 제공)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담보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실효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 (담보가치의 유지)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설정자가 상당액의 물건을 곧 보충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7조 (담보목적물의 변경)

-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어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어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이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제8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 ①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총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8.12.17.>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②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8.12.17.>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제9조 (담보목적물의 인도·대리처분)

- ①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지체

없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②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10조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훼손·공용정수·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배상금·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다.

제11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조사)

채권자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정자는 조사에 필요한 협력을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①양도담보권의 설정·보전·행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존·관리에 드는 각종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내에 "V"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등록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채권 매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법무사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말소(저당권 해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기일도래전 상황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서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점유·관리·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13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사항)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 : (인)

양도담보목적물 목록

소 재 지		
보관창고명 및 보관장소		
물 건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보 험	회 사 명	
	종 별	
	금 액	
소 재 지		
보관창고명 및 보관장소		
물 건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보 험	회 사 명	
	종 별	
	금 액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양도담보란

-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원재료·제품, 기계·기구 등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자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채취금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채취금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채취금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원재료·제품, 기계·기구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채무보증	공용
근 보 증	

(근) 보증서

[전문개정 2013.6.28]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연대보증의 위험성

-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최대 근보증 한도액까지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 연대보증기간은 최대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상환되는 시점까지 보증책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보증유효기간 선택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준하게 되어 대출거절, 한도축소 등 각종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대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 보증채무가 상속되어 자녀 등 상속인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위험성에 대해 읽고 이해하였음. 연대보증인 (인)

- ★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질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보증서 끝부분)은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대보증이란

- 저축은행(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용어해설

-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채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근보증」은 채무자와 저축은행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보증」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채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보증」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채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보증」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보증을 선택할 경우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설명

-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음. 연대보증인 _____ (인)

H B 저축은행 앞

년 월 일

연대보증인 _____ (인)
주 소

연대보증인(이하“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채무자가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저축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보증인이 책임지는 채무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아래의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 : 성 명 _____
주 소 _____

2.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저축은행은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네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보증**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보증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보증	
가. 거래약정 :	년 월 일자 _____ 약정서
나. 금액 :	액 : 금 _____ 원
다. 상환기일 :	년 월 일 _____
라. 이자율 :	연 _____ %
마. 지연 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미리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_____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윤년은 366일로 보고 계산함)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0.2.>

특정근보증
<p>채무자가 저축은행(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아래 약정의 상환기일 또는 거래기간을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 때에는 그 채무 포함)</p> <p>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p>

한정근보증
<p>채무자가 저축은행(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p> <p style="text-align: center;"> 거래, 거래, 거래</p>

포괄근보증
<p>채무자가 저축은행(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p> <p>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 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p> <p>나. 저축은행과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p> <p>다.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p>

3. 근보증 한도액 (근보증인 경우에 한함)

금	원
---	---

4. 보증의 유효기간 (근보증인 경우에 한함)

저축은행은 보증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형

에서 정한 날을 보증의 유효기간으로 하기로 합니다.

지정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p>정하지 아니합니다.</p> <p>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보증의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보증의 유효기간은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보증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증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보증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p>

장래지정형
<p>정하지 아니합니다.</p> <p>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보증의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보증의 유효기간은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보증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p>

②채무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중 다음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한 부분은 전항 제2호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개정 2022.2.3.>**
5.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6. 기타 저축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제2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일도래 전 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요구 사유 발생 포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저축은행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제3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①보증인이 채무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같은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저축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4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저축은행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 (보증인의 교체요구)

보증인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신용 등이 양호한 자로 저축은행에 보증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특약사항)

보증인 : _____ (인)

※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3.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3.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